

자문화 중심주의로 인한 문제점 찾기

소속

1학년 __반 __번

이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 1. 무슬림으로부터 서유럽을 구하고 싶었다는 테러 용의자

2011년 7월 22일 오후 3시 30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의 정부 청사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이 테러로 정부 청사 총리실 건물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상처를 입었다. 얼마 후 오슬로 북서쪽 30km에 위치한 우토야 섬에서 열린 노르웨이의 집권 여당인 노동당 청년 캠프 행사장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하여 68명이 죽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범인은 브레이빅이라는 청년으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브레이빅은 이후 이루어진 재판에서 오슬로 차량 폭탄 테러와 우토야섬에서 규벌어진 총기 난사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나는 무슬림(이슬람교도)으로부터 서유럽을 구하고 싶었다.”며 집권 노동당이 ‘무슬림을 대거 수입해’ 노르웨이의 문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레이빅은 ‘유럽 독립 선언’이라고 이름 붙인 성명에서 네덜란드를 이슬람의 유럽 식민지화에 희생된 나라로 규정하면서 ‘유럽의 반역자’를 처단할 탄저균의 분량을 계산하기도 했으며, 이슬람 여성 인권에 대한 영화 「복종」을 만들었다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한 데오 반 고흐 감독에 대해 언급하며 고흐 감독과 함께 대본을 쓴 여성 아얀 하르시 알리 네덜란드 하원 의원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 무슬림: 이슬람교도

사례 2. 세계 10대 혐오 음식

2011년 미국 「포브스 지」의 인터넷 페이지 포브스 온라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혐오 음식에 대한 게시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세계 10대 혐오 음식 1위는 몽골 유목민들이 즐겨 마시는 암말의 젖을 숙성시킨 ‘마유주’가 선정되었다. 세계 10대 혐오 음식 2위는 상어 고기를 발효시킨 아이슬란드 음식인 ‘하갈’, 3위는 ‘뱀술’, 4위는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삶은 음식인 ‘발롯’, 5위는 시뻬이라는 고양이의 똥으로 만든 인도네시아 고가 커피인 ‘시뻬 커피’가 선정됐다. 이 밖에 취한 새우 요리인 중국의 ‘취하’, 중국의 ‘제비집 요리’, ‘쑹화단’, 이탈리아의 ‘카수마르주(구더기 치즈)’, 노르웨이의 ‘양머리 요리’가 뒤를 이었다. 발표한 세계 혐오 음식들에 대해 각국의 누리꾼들은 서양 중심의 사고에 의해 선정된 결과물이라면서 비판하였다.

1. 사례1에서 테러범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 생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 사례 2에서 「포브스 지」의 ‘혐오 음식’에 대해 각국의 누리꾼들이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혐오 음식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보편적 윤리 기준 생각하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 1. 인도의 명예 살인

2016년,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서 한 남성이 다른 카스트와 결혼하려던 딸을 살해했다. 이 남성은 그의 딸에게 다른 카스트와의 결혼은 안 된다고 완강히 반대했지만, 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그는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인도 경찰은 이 남성을 명예 살인으로 체포하였다.

국제 연합(UN)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세계에서 약 5,000여 건의 명예 살인이 벌어지며 이 중 1,000여 건이 인도에서 발생 하고 있다. 명예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자신의 카스트와 다른 카스트와의 결혼 때문이다. 인도는 다른 카스트와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남성의 카스트가 상위일 경우는 결혼이 허용되지만, 여성이 상위 카스트일 경우 여성의 집안에서 자신의 카스트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명예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사례 2. 중국의 전족 문화

전족(纏足)은 작은 발이 미인의 기준이었던 과거 중국에서 여성의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발을 묶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풍속이다. 기록에 따르면 전족은 송(宋)나라 때 시작되어 명(明)~청(淸)나라 시대까지 무려 천년 동안 유행했던 악습이다. 1차 성장기인 3~5세 사이에 전족 만들기를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형겅을 발에 동여매고 엄지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발바닥 방향으로 접어 넣듯 묶어 조그만 신발에 고정한다. 발뒤꿈치에서 발 끝까지 약 10cm가 이상적이라고 하며 모양에 따라 춘순(春筍), 금련(金蓮)이라고도 부른다.

한창 성장할 시기에 억지로 묶인 발 때문에 느끼는 통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당시 “작은 발 한 쌍을 가지려면 한 항아리의 눈물을 쏟아야 한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으니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전족은 명나라 때 특히 성행했으며, 청나라 말기인 1894년에는 서태후(西太后)가 금지령을 내려 쇠퇴하였으나 변방 지역에서는 전통으로 행하는 곳이 종종 있었다. 중화민국 수립 시기에 일어난 신해혁명 이후, 여성 운동이 전개되면서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전족 여인들 을 끝으로 ‘전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1. 위 사례들이 보편적 윤리 기준인 ‘세계 인권 선언’의 어느 조항에 어긋나는지 적어 보세요

2. 어느 사회의 고유한 문화가 인류 보편적 윤리에 어긋날 경우에도 그 문화는 존중되어야 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적어 보세요.

세계인권선언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 조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2 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5 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 16 조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해소 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 할 자격이 있다.

제 17 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20 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1 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 23 조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 25 조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6 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제 27 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 28 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 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